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94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정태호 · 이학영 · 최기상
김우영 · 허성무 · 이광재
이수진 · 김주영 · 김태년
정일영 · 이주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기술의 발전 주기가 급격히 단축됨에 따라 정형화된 현행 계약제도로는 시장에 없는 혁신기술의 도입에 한계가 있어 혁신기술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시점임.

이에 혁신기술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계약과 그 성과물에 대한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을 도입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에 시범특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

터 제7조의4까지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개발·구매연계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와 그 연구개발의 성과물에 대하여 구매의 조건을 미리 약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이하 “개발·구매연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매에 관한 경쟁절차는 제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국가전략기술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4.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파급효과와 공공수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구매연계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모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일 것
2. 제1호에 따른 공모 시 연구개발 성과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구매의 조건·규모·기간 및 구매금액의 상한 또는 구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함께 공고되었을 것

③ 개발·구매연계계약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관리 및 평가,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개발·구매연계계약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약정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

⑤ 개발·구매연계계약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약정한 구매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해당 연구개발 성과물의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계약담당공무원 및 개발·구매연계계약과 관련한 심의·자문에 참여한 자가 개발·구매연계계약의 체결·이행 및 관리와 관련한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징계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구매연계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성과목표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이하 “성과목표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된 물품 또는 용역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

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성과목표형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에는 성과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구성능·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성과목표의 달성도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 이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성과목표형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술적 한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성실실패”라 한다)에는 이미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6항에 따른 혁신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2.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3.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성과목표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④ 성과목표형계약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

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과 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계약담당공무원 및 성과목표형계약과 관련한 심의·자문에 참여한 자가 성과목표형계약의 체결·이행 및 관리와 관련한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징계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목표의 설정, 제2항에 따른 조정, 제3항에 따른 성실실패의 인정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혁신계약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목표형계약의 운영과 제6항에 따른 혁신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시범특례에 의한 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 및 이행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이하 이 조에서 “시범특례”라 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및 이행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계약에 적용될 시범특례를 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④ 시범특례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시범특례를 정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특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조의3에 따른 성과목표형계약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개발·구매연계계약) ①</u> <u>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와 그 연구개발의 성과물에 대하여 구매의 조건을 미리 약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이하 “개발·구매연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u> <u>이 경우 그 구매에 관한 경쟁절차는 제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국가전략기술</u> <u>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u> <u>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u>

4.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 파급효과와 공공수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개발 · 구매연계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모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일 것

2. 제1호에 따른 공모 시 연구개발 성과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구매의 조건 · 규모 · 기간 및 구매금액의 상한 또는 구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함께 공고되었을 것

③ 개발 · 구매연계계약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 관리 및 평가,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

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개발·구매연계계약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약정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다.

⑤ 개발·구매연계계약의 연구개발 성과물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약정한 구매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해당 연구개발 성과물의 구매 계

<신 설>

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계약담당 공무원 및 개발·구매연계계약과 관련한 심의·자문에 참여한 자가 개발·구매연계계약의 체결·이행 및 관리와 관련한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징계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구매연계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성과목표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이하 “성과목표형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계약 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된 물품 또는 용역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성과목표형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에는 성과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구성능·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성과목표의 달성도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 이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성과목표형계약의 계약상대가 계약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술적 한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성실실패”라 한다)에는 이미 계약을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6항에 따른 혁신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2.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3.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성과목표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④ 성과목표형계약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과 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계약담당 공무원 및 성과목표형계약과 관련한 심의·자문에 참여한 자가 성과목표형계약의 체결·이행 및 관리와 관련한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징계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목표의 설정, 제2항에 따른 조정, 제3항에 따른 성실실패의 인정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소속으로 혁신계약심의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신 설>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목표형 계약의 운영과 제6항에 따른 혁신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시범특례에 의한 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른 계약 체결 방법 및 이행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이하 이 조에서 “시범특례”라 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및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계약에 적용될 시범특례를 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제23조(개산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概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④ 시범특례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시범특례를 정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이상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특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개산계약) ① -----

-----.

1. ~ 4. (생략) <u><신설></u> ② · 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5. 제7조의3에 따른 성과목표형</u> <u>계약</u> ② · ③ (현행과 같음)
--	---